

改正과 서울市の 駐車場設置條例가 改正됨에 따라서 現行 條例를 改正된 法 規定에 一致 되도록 整備하면서 이 事業運營에 있어 現況과 맞지 않는 土地의 賣却規模와 方法 등을 明示하여 住居環境改善事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 改正案의 關係法令과 一致하고, 條例運營上 現況과 맞지 않았던 事項을 충분히 反映하여 補完되었다고 인정되어 市長이 提出한 改正案대로 改正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은 93年度 서울市와 그 所屬機關의 職制가 改正됨에 따라서 이 條例에서 정한 再開發業務와 關聯된 價格評價委員會 業務가 당초 住宅局에서 都市計劃局으로 移管됨으로 業務分掌이 變更됨에 따라서 이 委員會를 管理하는 所屬公務員도 당초 住宅局長에서 都市計劃局長으로 바꾸도록 條例를 改正한 것입니다.

세째로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政府施策에 따라서 서울市가 建立하게 되는 公共아파트와 貫入者아파트를 建設할 수 있는 財源을 서울市가 出資하도록 되어 있어, 公社의 法定資本金 限度額을 上向하도록 하면서 92年度 地方公企業法이 改正됨에 따라 公社 運營要領을 地方公企業法에 맞도록 條例를 改正하고자 한 것이나, 條例改正案中 公社에 대한 業務監督과 業務의 報告 및 檢査를 要求할 수 있는 機關을 市長 外에 內務部長官을 追加하려고 한 것은 地方化時代의 趣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指摘되어서, 또 地方公企業法으로도 公社運營을 직접 規制할 수 있는 事項이라고 판단되어 公社의 業務監督과 報告 및 檢査 要求權者를 規定한 條例改正案 第28條와 第29條 中 內務部長官을 削除하도록 우리 委員會에서 修正案을 提案하였으며, 나머지 改正案은 市長이 提案한 內容대로 改正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上程된 3件的 條例는 서울市 都市發展에 중요한 內容을 規定하는 條例로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그 重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深度 있는 審査를 하였습니다.

改正條例案의 구체적인 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內容을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하고 修正한 內容대로 3件的 條例가 改正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님들의 적극적인 協助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감사합니다.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3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제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제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주택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경영의 기본원칙)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1조원”을 “1조5천억원”으로 한다.

<p>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 적</li> <li>2. 명 칭</li> <li>3.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자본금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에 관한 사항</li> <li>6. 임직원에 관한 사항</li> <li>7. 이사회에 관한 사항</li> <li>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li> <li>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li> <li>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li> <li>11. 공고에 관한 사항</li> <li>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li> <li>13.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9조제1항중 “투자관리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p> <p>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0조의2(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li> <li>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9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공사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의 범위와 같다.</p> <p>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1조(예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p>	<p>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1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때까지 적립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4장에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7조의2(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27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p> <p>제27조의4(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7조의5(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p>
--	---

<p>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0조의2(경영평가 및 지도) ①시장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선계획에서 건축물의”를 추가한다.</p> <p>제12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로 한다.</p> <p>제19조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p> <p>제20조중 “건축법 제48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로 한다.</p> <p>제21조중 “규정은”을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5조본문단서중 “다음 각호의 주차대수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p>
<p>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 “신축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제4조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시장”을 “시행자”로 한다.</p> <p>제5조제1항중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을 “주거기능”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공동주택 건설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제3항중 “참작하여” 다음에 “주거환경개</p>	<p>제32조제1항제2호중 “그 건축면적 이하”를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3조(토지의 가격산정 및 매각시기) ①제31조에 의한 연고권자는 개선계획수립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32조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토지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별표]중 “신축(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신축 건축물”로 한다.</p> <p>[별지서식]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p>